



| 주 | 서영엔지니어링

135-851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3-9 성지빌딩 4F

Tel : 02-413-2962/4 Fax : 02-413-2965

담당 박상환 Tel :02-413-2962/5 Fax : 02-413-2965 E-mail : swpark59@nate.com

문서번호 : 서영감리제2018-538호

시행일자 : 2018-09-07

수 신 : 도시기반시설본부장

참 조 : 도시철도설비부장

선 결			지 시	
접 수	일자 시간		결 재	
	번호			
처 리 과			공 람	
담 당 자				
심 사 자			심 사 일	

제 목 :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시선유도등 설치삭제 실정보고서 제출의견

1. 공문 도시철도설비부-11757 (2017.09.26.)관련사항 입니다.

2. 위호와 관련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관련공정(전기) 시선유도등 변경 관련하여 불인과 같이 검토.확인한결과 설계변경이 예상되어 실정보고 합니다.

붙 임 : 1. 감리 검토의견서 1부

2. 시공사공문 사본 및 실정보고서 1부. 끝.

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책임감리원



# 감리실정보고서

공사명	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918공구	검토구분	○감리단 자체검토	●발주자 검토요청	○시공사 검토요청	○기타
문서번호	도시철도설비부-11757	검토일자	2018.07.20	검토자	박상환	92
수신	도시기반시설본부장	확인자	책임감리원 채종근			
제목	시선유도등 설치삭제 실정보고 검토					

## 1. 검토목적

지하철 9호선3단계 931정거장 시선유도등 설치여부에따른 적정성 검토 및 전기공사 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하고자함.

## 2. 공사개요

- 공사명 :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전기공사
- 공사금액: 4,736,230,060원
- 착공일 : 2016년 05월 12일
- 준공예정일 : 2018년 12월 31일
- 수전용량 : 4100KVA ( 정거장:3800KVA, S1:300KVA)
- 정거장 : 1개소 (대합실,승강장)
- 본선터널 : 터널조명,비상콘센트, 비상등/유도등
- 본선 환기구 : 3개소 (930S1,E1,E2)

## 3. 관련근거

- 가. 공문 : 도시철도설비부-11757(2017.09.26) 9호선3단계 전기분야 공정회의 결과알림
- 나. 1)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19조(설계변경등)①항 ,2) 「공사계약일반조 건」 제21조 (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등), 3) 「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」 제19조 ,제19조의 1~7, 제20조

## 4. 관련서류 내용

- 가. 지하철 9호선3단계 918공구 본선 시선유도등설비 평면도 (도면번호:918-31-EM-LA-0068-0)  
에 터널시선유도등(LED 20W 시선유도등)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음.
- 나. 지하철 9호선3단계 918공구 (실시설계 보고서)-대피방향 조절가능 인명피해최소 및본선터널에설치
- 다. 지하철 9호선3단계 각공구별 설치반영현황
- 918공구 터널시선유도등 도면 및 내역 반영
  - 919공구 터널시선유도등 도면 및 내역미반영
  - 920공구 터널시선유도등 도면 및 내역미반영
  - 921공구 터널시선유도등 도면 및 내역미반영
  - 922공구 터널시선유도등 도면 및 내역미반영
  - 923공구 터널시선유도등 도면 및 내역미반영

## 5. 관련법규 검토내용

- 가.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(국토해양부)-2014.2월
- 7.4터널
  - 7.4.1 설치장소
- 본 지침은 「 도로법」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 건설하는 터널에 적용한다.
- 7.4.2 대상터널
- ①터널조명 ②구조물도색 ③시선유도표지④표지병 ⑤ 도로전광표지⑥ 터널시선유도등

# 감리실정보고서

공 사 명	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918공구	검 토 구 분	○감리단 자체검토	●발주자 검토요청	○시공자 검토요청	○기타
문 서 번 호	도시철도설비부-11757	검 토 일 자	2018.07.20	검토자	박상환	<i>Jan</i>
수 신	도시기반시설본부장	확 인 자	책임감리원 채종근 <i>채종근</i>			
제 목	시선유도등 설치삭제 실정보고 검토					

나. 도로법 8조 (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) 1항~6항 적용대상 및 상기 위치침은 산악지역의 도로상에 건설되는 터널에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며 적용한다.

## 6. 검토내용

### 가. 변경사항

터널시선유도등 반영 → 터널시선유도등 삭제

### 나. 변경사유

철도시설 기술기준 부적합

### 다. 변경내역 증감현황금액

구 분	변경전(원)	변경후(원)	계약공사비 증감금액(원)	비 고
순공사비	3,401,001,343원	3,366,385,502원	-34,615,841원	
간접비	1,335,228,717원	1,319,321,201원	-15,907,516원	
합 계	4,736,230,060원	4,685,706,703원	-50,523,357원	

### 라. 변경세부내역

구 분	변경전(원)	변경후(원)	계약공사비 증감금액(원)	비 고
터널설비공사	209,785,695원	175,169,854원	-34,615,841원	●시선유도등56개삭제 ●시선유도등삭제에 따른 배관배선삭제
합 계	209,785,695원	175,169,854원	-34,615,841원	

## 7. 검토결과

-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18공구 터널시선유도등(LED 20W 시선유도등)건에 대한 검토결과 도로안전시설은 당해터널의 구조 교통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철도지하철은 철도시설의기술기준 에 적용되는 해당부분이 없으며 불필요하다고 판단 설계변경이 타당하여 변경 시공코자 하며,
- 본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소되는 금액은 당초대비 (-50,523천원)으로 전체공사 준공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이내에서 조정하되, 설계변경에 정산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사료됨.